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3.

제안자 : 여성가족위원장

수정이유

1366 긴급전화센터는 긴급상담이 주요 업무로 경찰에 사건정보를 사실상 요청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으므로 이를 삭제하고,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보는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로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보제공 범위를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로 명확히 하고, 정보보호조치 강구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.

수정주요내용

가.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긴급전화센터를 삭제하고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

사사법정보 중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로 명확히 하며, 정보보호조치 강구 의무, 형사사법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한 근거,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신설함(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나.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20조제1항 신설).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“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”을 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”으로, “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”를 “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(이하 “형사사법정보”라 한다) 중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방법·절차와 정보제공 등에”를 “방법·절차에”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해 사용방법·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정보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의2(수사기관의 협조) (생 략)	제9조의2(수사기관의 협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	제9조의2(수사기관의 협조) ①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긴급전화센터,</u> <u>상담소 또는 보호</u> <u>시설의 장은 피해</u> <u>자 상담을 위하여</u> <u>피해자의 동의를</u> <u>받아 피해사실 등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사건정보를 경</u> <u>찰관서의 장에게</u> <u>요청할 수 있다. 이</u> <u>경우 요청을 받은</u> <u>경찰관서의 장은</u> <u>특별한 사유가 없</u> <u>으면 이에 따라야</u> <u>한다.</u> <u><신 설></u>	② <u>상담소 또는 보</u> <u>호시설의 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「형사사법절 차 전자화 촉진 법」 제2조 제3호 의 형사사법정보 (이하 “형사사법정 보”라 한다) 중 피 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-- ----- -----. <u><후단 삭제></u> ③ 제2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 공을 요청받은 경 찰관서의 장은

<신 설>

<신 설>

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해 사용방법·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정보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⑤ 누구든지 이 법

		<u>에 따라 제공받은</u> <u>형사사법정보를</u> <u>목</u> <u>적 외의 용도로 사</u> <u>용하거나 제3자에</u> <u>게</u> <u>제공하여서는</u> <u>아니 된다.</u> ⑥ <u>경찰관서의 장</u> <u>은 여성가족부장관</u> <u>이 정보보호조치를</u> <u>하지 아니하거나</u> <u>제5항을 위반하는</u> <u>경우에는 형사사법</u> <u>정보의 제공을 중</u> <u>지 또는 제한할 수</u> <u>있다.</u> ⑦ ----- -----<u>방법 · 절차에</u> ----- ----- -----.
	<u><신 설></u>	③ <u>제2항에 따른</u> <u>요청 방법 · 절차와</u> <u>정보제공 등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 여성</u> <u>가족부령으로 정한</u> <u>다.</u>
제20조(벌칙) <u>설></u>	<u><신</u>	제20조(벌칙) (현행과 같은) 제20조(벌칙) ① <u>제9</u> <u>조의2제5항을 위반</u> <u>하여 형사사법정보</u> <u>를 목적 외의 용도</u> <u>로 사용하거나 제3</u>

<u>①·②</u> (생략)		<u>자에게 제공한 자</u> <u>는 5년 이하의 징</u> <u>역 또는 5천만원</u> <u>이하의 벌금에 처</u> <u>한다.</u> <u>②·③</u>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8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2.

발 의 자 : 김한규 · 이기현 · 진선미
임미애 · 신정훈 · 문대림
김태년 · 박홍배 · 박희승
박정현 · 위성곤 · 김영환
박상혁 · 정진욱 · 김성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,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긴급전화센터를 삭제하고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 중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로 명확히 하며, 정보보호조치 강구 의무, 형사사법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한 근거,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신설함(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나.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20조제1항 신설).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(이하 “형사사법정보”라 한다) 중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해 사용방법·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정보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·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수사기관의 협조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조의2(수사기관의 협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(이하 “형사사법정보”라 한다) 중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<u>제2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<u>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해 사용방법 · 사용부서나 그 밖에</u>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20조(벌칙) <u><신 설></u> <u>①</u> · <u>②</u> (생략)	<u>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정보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⑥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</u> <u>⑦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·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20조(벌칙) <u>①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<u>②</u> · <u>③</u>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--	---